

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

5-2-4

규정번호	5-2-4
제정일자	1982.7.5
최근개정	2026.7.20
개정차수	11차 개정
관리부서	글로벌교육 팀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성실 유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자 중 국외 유학 및 연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여부를 심의·검토함으로써 추천업무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자격) ① 국외유학 추천은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재학 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(전학년성적 평균평점 3.0 이상)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. 다만, 국가와 학교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8.08.27)

② 국외연수 추천은 우리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(개정 2018.08.27., 2026.7.20.)

1. 정부에서 특별히 파견하는 경우
2. 국제회의 및 대회 참가
3. 국제문화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행사 참가
4. 교육이수과정과 관련이 있는 개별전공연수
5. 교육상의 목적으로 총장이 주관하는 단체여행

제 3 조 (신청) 국외유학 및 연수 추천은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소정양식을 교부받아 학과장의 추천의뢰서를 첨부, 제출하면 총장이 허가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. 단,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 및 학생지원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, 2019.06.17)

② (항 삭제 2017.02.27.)

제4조(제출서류) 추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18.08.27., 2026.7.20.)

1.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
2. <삭제(2026.7.20.)>
3. <삭제(2026.7.20.)>
4. 졸업 및 재학증명서
5. 성적증명서
6. 보호자 동의서 및 학생서약서
7. <삭제(2026.7.20.)>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2-4 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

8. 기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(신설 2026.7.20.)>

제 5 조 (여비) 국외유학 및 연수의 소요경비는 대학이 주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8.08.27)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71> <생략>

<72> 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②, 제3조①·②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73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03. 부칙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2-4 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2항, 제4조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)